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6월 20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FTA무역규범과 이경식 과장(044-203-5820) / 윤영범 사무관(5824)

산업부, FTA 원산지 관련 자동차 업계와 소통

- 「제3회 FTA 원산지 간담회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6.19(금) 서울 자동차산업협회(자동차 회관 소재)에서 **자동차 관련 FTA 원산지 규정 내용을 검토**하고 **FTA에서의 협상 방향을 논의**하기 위해 **「제3회 FTA 원산지 간담회**(이하 '간담회')」를 **개최했다.**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**원산지 협상 담당자**와 **업계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「FTA 원산지 간담회」**를 **지속**적으로 **개최**하고 있으며 금번 간담회는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인 **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**되었다.

* 제1회 FTA 원산지 간담회(4.24), 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(5.27) 旣개최

< 「제3회 FTA 원산지 간담회」 개요 >

◈ 일시/장소: '15.6.19(금) 15:00~17:00, 서울 자동차산업협회

◈ 참석대상: FTA무역규범과장, 현대기아차, 한국지엠, 르노삼성,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,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, 자동차산업협회,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문가 등

□ **자동차 산업**은 **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**으로 우리기업들의 **FTA활용에 대한 관심이 큰 분야**이다.

* '14년도 완성차 수출액은 489억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약 8.5% 차지 (무역협회 자료 기준)

○ 특히, 완성차 생산은 **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**하여 최종생산에 투입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, 완성차-부품을 망라하는 원산지 기준이 **FTA 협상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다.**

□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기아차, 한국지엠, 르노삼성, 쌍용자동차 등 **국내 완성차 업체**와 현대모비스 등 **부품업체**들은 FTA 원산지기준 협상시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**우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협상 추진**이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고,

○ 구체적으로,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일FTA, RCEP 협상관련 **누적**(Cumulation), **중간재**(Intermediate Materials), **역내가치포함비율**(Regional Value Content) 계산방식, 자동차 **품목별원산지기준**(PSR) 협상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.

* 한중일 FTA: 한중일 3국이 참여, '13.3월 협상 개시 이후 7차 협상 개최('15.4, 서울)

*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: 한국, 아세안10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 '13.5월 협상 개시 이후 8차 협상 개최('15.6, 교토)

◈ **누적(Cumulation)**

☞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

◈ **중간재(Intermediate Materials)**

☞ 제품의 생산자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중간재료로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해당 중간재료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

◈ **역내가치포함비율(Regional Value Content) 계산방식**

☞ RVC 계산방식은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로 파악하는 공제법(build-down method)과 제품가격중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직접 산출하여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로 포착하는 집적법(build-up method) 등이 있음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**FTA 원산지 규정 협상에 나설**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윤영범 사무관(☎ 044-203-58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자동차 산업 주요 통계

1 자동차의 생산 · 내수 · 수출입 규모

(천대, 백만불, %)

구 분			2012		2013		2014	
생 산			4,562	(-2.0)	4,521	(-0.9)	4,525	(0.1)
내 수			1,411	(-4.3)	1,383	(-1.9)	1,464	(5.8)
수출	대 수		3,171	(0.6)	3,089	(-2.6)	3,063	(-0.8)
	금 액		68,239	(3.5)	71,006	(4.1)	72,174	(1.6)
		완성차	43,629	(1.8)	44,927	(3.0)	45,539	(1.4)
		부 품	24,610	(6.6)	26,079	(6.0)	26,635	(2.1)
수입	대 수		154	(31.3)	191	(23.7)	266	(39.4)
	금 액		8,702	(0.1)	9,731	(11.8)	12,428	(27.7)
		완성차	5,080	(22.7)	6,116	(20.4)	8,861	(44.9)
		부 품	3,622	(-15.7)	3,615	(-0.2)	3,567	(-1.3)

2 자동차산업의 위상 (2013년)

구 분	종업원수	생산액	부가가치	수출액('14)	무역수지('14)
규모	321천명	181조원	55조원	722억불	597억불

3 세계 생산 점유율 변화

(천대, %)

구 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
총생산 대수 (국내 생산) (해외 생산)	6,877 (4,272) (2,605)	7,798 (4,657) (3,141)	8,197 (4,562) (3,635)	8,629 (4,521) (4,108)	**8,939** **(4,525)** **(4,414)**
세계 생산 대수 (우리나라 점유율)	77,208 (8.9%)	80,836 (9.7%)	84,843 (9.6%)	88,095 (9.8%)	**90,427** **(9.9%)**

4 자동차 생산국 순위

(천대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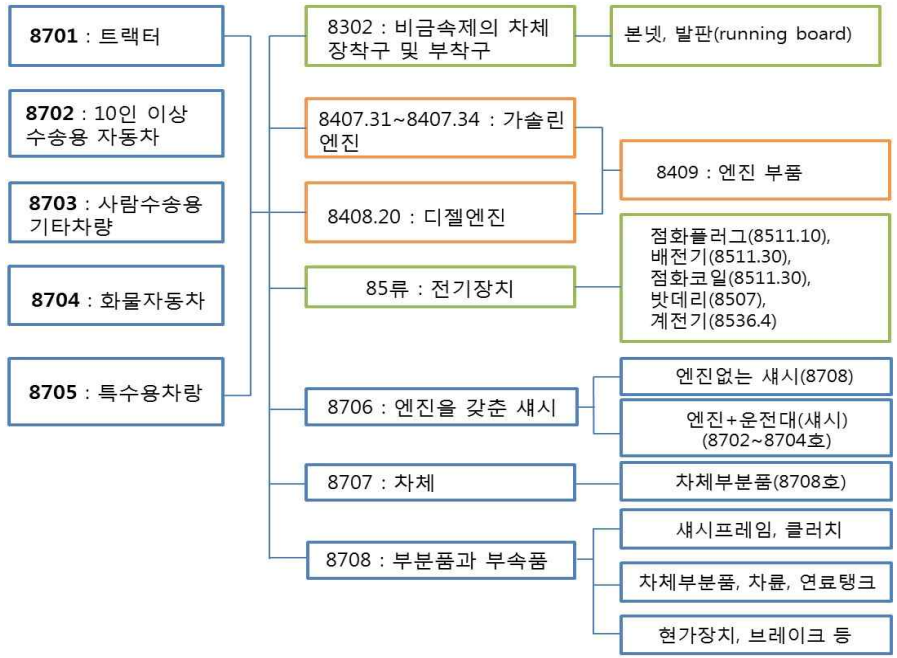
순위	'12년			'13년			'14년			
	국 가	대 수	비중	국 가	대 수	비중	국 가	대 수	비중	증감률
1	중 국	19,272	22.8	중 국	22,117	25.0	중 국	23,723	26.3	7.3
2	미 국	10,333	12.1	미 국	11,066	12.5	미 국	11,661	12.9	5.4
3	일 본	9,943	11.7	일 본	9,630	10.9	일 본	9,775	10.8	1.5
4	독 일	5,797	6.8	독 일	5,877	6.7	독 일	6,051	6.7	3.0
5	**한 국**	**4,562**	**5.4**	**한 국**	**4,521**	**5.1**	**한 국**	**4,525**	**5.0**	**0.1**
6	인 도	4,149	4.9	인 도	3,933	4.5	인 도	3,878	4.3	-1.4
7	브라질	3,431	4.0	브라질	3,738	4.2	멕시코	3,368	3.7	10.2
8	멕시코	3,002	3.5	멕시코	3,055	3.5	브라질	3,173	3.5	-15.1
9	캐나다	2,463	2.9	태 국	2,457	2.8	스페인	2,403	2.7	11.1
10	태 국	2,429	2.9	캐나다	2,380	2.7	캐나다	2,394	2.7	0.6
세계		85,117	100.0		88,311	100.0		90,105	100.0	2.0

※ 「2014기준 한국의 자동차 산업(2014년, 한국자동차산업협회)」 참조

참고 2 자동차 관련 주요 원산지협상 대상

□ 자동차 관련 원산지협상 대상은 87류 일반차량(HS 6단위 기준 74개 품목), 83류·84류·85류(HS 6단위 기준 총 807개 품목) 중 자동차관련 부품으로 구성

<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>



□ 우리의 주요 기체결 FTA에서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기준은 역내 가치비율(RVC) 중심으로 설정

< 주요 FTA별 일반자동차(87류) 원산지기준 >

FTA	한-아세안 FTA	한-미 FTA	한-EU FTA
원산지기준	RVC(45), CTH or RVC(40)	RVC (BU35, BD55, NC35)	VAR(45), CTH or VAR(50)

* CTH: 4단위세번변경, BU: 집적법, BD: 공제법, NC: 순원가법, VAR: 부가가치기준(역외산비율)